

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-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8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실제 점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반환 근거를 신설하고 모호했던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치법규 개정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정비(안 제3조, 제4조)
- 나. 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점용료 반환 근거 마련(안 제4조의2, 안 별표2)
- 다. 점용료 면제 대상 정비(안 제5조제2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- 마.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26. 6. 2. ~ 2026. 6. 22. (20일간)

- 바. 기타 참고사항

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”를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8항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8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점용료의 반환) ① 제4조에 따른 점용료 부과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
2.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점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

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5조제2호 중 “「국유재산법시행령」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”를 “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

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국		환경녹지국
입 안 자	공원과장	김 효 식
	공원행정팀장	김 효 선
	담 당 자 (연락처)	한 덕 수 (481-2415)

[별표 2]

점용료의 반환기준(제4조의2제2항 관련)

구 분	반환금액
제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점용 개시일 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 전액
제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를 월할 계산하여 미이용기간에 대한 금액
제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
제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의 10퍼센트와 납부한 점용료를 월할 계산하여 미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점용료의 산정기준) ① 점용료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에 따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,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.	제3조(점용료의 산정기준) ① ----- ---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----- ----- -----.
제4조(점용료 징수방법)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다.	제4조(점용료 징수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8 항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.	<삭 제>
1.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	
2.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	

현행	개정안
<u>인정되는 경우</u> 3. <u>도시공원 등 점용허가를 받은</u> <u>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</u> <u>취소된 경우</u> 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2(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</u> <u>점용료의 반환) ① 제4조에 따른</u> <u>점용료 부과금액이 5천원 미만인</u> <u>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</u> <u>다.</u> <u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</u> <u>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</u> <u>부한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</u> <u>반환할 수 있다.</u> 1. <u>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</u> <u>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</u> <u>우</u> 2. <u>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</u> <u>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</u> <u>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</u> <u>인정되는 경우</u> 3. <u>점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</u> <u>청하는 경우</u> <u>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</u> <u>기준은 별표 2와 같다.</u>
제5조(점용료의 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제5조(점용료의 면제)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										
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「국유재산법시행령」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<신설> <신설> 3. 4. (생략) <신설>	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----- ----- ----- 가.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 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. 4. (현행과 같음) [별표 2] 점용료의 반환기준(제4조제2항 관련) 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분</th><th>반환금액</th></tr> <tr> <td>제 4 조 의 2 제 2 항 제 1 호 에 해당하는 경우 중 점용 개시일 전인 경우</td><td>납부한 점용료 전액</td></tr> <tr> <td>제 4 조 의 2 제 2 항 제 1 호 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</td><td>납부한 점용료를 월한 계산하여 미이용기간에 대한 금액</td></tr> <tr> <td>제 4 조 의 2 제 2 항 제 3 호 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전인 경우</td><td>납부한 점용료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</td></tr> <tr> <td>제 4 조 의 2 제 2 항 제 3 호 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</td><td>납부한 점용료의 10퍼센트와 납부한 점용료를 월한 계산하여 미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</td></tr> </table>	구분	반환금액	제 4 조 의 2 제 2 항 제 1 호 에 해당하는 경우 중 점용 개시일 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 전액	제 4 조 의 2 제 2 항 제 1 호 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를 월한 계산하여 미이용기간에 대한 금액	제 4 조 의 2 제 2 항 제 3 호 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	제 4 조 의 2 제 2 항 제 3 호 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의 10퍼센트와 납부한 점용료를 월한 계산하여 미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
구분	반환금액										
제 4 조 의 2 제 2 항 제 1 호 에 해당하는 경우 중 점용 개시일 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 전액										
제 4 조 의 2 제 2 항 제 1 호 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를 월한 계산하여 미이용기간에 대한 금액										
제 4 조 의 2 제 2 항 제 3 호 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										
제 4 조 의 2 제 2 항 제 3 호 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의 10퍼센트와 납부한 점용료를 월한 계산하여 미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										

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0-9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6년 8월 31일
제안자 : 도시환경위원장

☐ 수정이유

- 점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 점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, 실제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공제하여 반환금액을 산정하도록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점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금액 산정기준 중 “미이용기간”을 “이용기간”으로 수정함.(안 별표 2)

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별표 2 중 “제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”의 반환금액란의 “**미이용기간**”을 “**이용기간**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□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장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**수정안**

현행	개정안	수정안																				
<신설>	[별표 2] <u>점용료의 반환기준</u>(제4조의2제2항 관련) <table> <tr> <th>구분</th> <th>반환금액</th> </tr> <tr> <td>제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점용 개시일 전인 경우</td> <td>납부한 점용료 전액</td> </tr> <tr> <td>제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</td> <td>납부한 점용료를 원할 계산하여 미이용기간에 대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제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전인 경우</td> <td>납부한 점용료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제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</td> <td>납부한 점용료의 10퍼센트와 납부한 점용료를 원할 계산하여 미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</td> </tr> </table>	구분	반환금액	제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점용 개시일 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 전액	제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를 원할 계산하여 미이용기간에 대한 금액	제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	제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의 10퍼센트와 납부한 점용료를 원할 계산하여 미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	[별표 2] <u>점용료의 반환기준</u>(제4조의2제2항 관련) <table> <tr> <th>구분</th> <th>반환금액</th> </tr> <tr> <td>제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점용 개시일 전인 경우</td> <td>납부한 점용료 전액</td> </tr> <tr> <td>제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</td> <td>납부한 점용료를 원할 계산하여 미이용기간에 대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제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전인 경우</td> <td>납부한 점용료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</td> </tr> <tr> <td>제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</td> <td>납부한 점용료의 10퍼센트와 납부한 점용료를 원할 계산하여 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</td> </tr> </table>	구분	반환금액	제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점용 개시일 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 전액	제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를 원할 계산하여 미이용기간에 대한 금액	제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	제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의 10퍼센트와 납부한 점용료를 원할 계산하여 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
구분	반환금액																					
제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점용 개시일 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 전액																					
제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를 원할 계산하여 미이용기간에 대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
제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
제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의 10퍼센트와 납부한 점용료를 원할 계산하여 미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
구분	반환금액																					
제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점용 개시일 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 전액																					
제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를 원할 계산하여 미이용기간에 대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
제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
제4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사용 또는 점용 개시일 이후인 경우	납부한 점용료의 10퍼센트와 납부한 점용료를 원할 계산하여 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																					